광주·전남 요양병원 40% 스프링클러 없다

장성 참사 이후 의무 설치 불구 예산 부담 등 이유로 소극적
자발적 설치로 참사 막은 나주 한 요양병원 반면교사 삼아야
집단수용시설 배연·제연시설 설치 등도 기준 강화 목소리

광주시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새벽 3시께 5층 화장실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이 난 것이다.

당시 요란하게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새벽 시간인 탓에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도 잠을 자느라 대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히 불은 병원 당직근무자가 3분 만에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발견이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환자·보호자뿐 아니라 간호사 등 직원들까지도 오작동으로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189명의 사상자(사망 38명)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인전문 병원, 요양병원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참사의 경우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인 점과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꼽히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실정도 이와 다르지 않아 요양병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화재 대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입원해야 하는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거동마저 불편해 비상 사태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시·전남도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전남 요양병원 137곳 중 55곳(40.1%)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56개 중 21곳(37.5%)에, 전남은 81곳 중 34곳(41.9%)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이들 병원 대부분은 설립된 지 오래되거나 규모가 다소 작은 병원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 근린생활시설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201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새로 짓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요양병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올해 6월 말까지 유예한 상태다. 유예기간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지역 요양병원 상당수가 예산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고 있다.

반면, 지난 2015년 4월 화재가 났던 나주 J요양병원은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미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사전에 막았던 사례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모든 집단수용시설에 스프링클러는 물론 배연(연기 배출)·제연(연기 차단)시설도 의무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이 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이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탓에 지역 요양병원 중 배연·제연시설을 갖춘 병원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연중 2회 이상 의무 실시해야 소방훈련도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근무중인 B씨는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 적은 없고 이론교육 10분 정도를 할 뿐"이라며 "이는 요양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감식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38명 사망 세종병원 연기 확산 경로 4가지로 압축

두 병원 연결통로·엘리베이터 틈새 등 통해 위층으로 번져
"좁은 공간에 불법증축으로 이어붙인 건축물도 한 원인" 지적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1층에서 발생한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병원 위층으로 확산한 경로를 4가지로 압축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28일 3일째 이어진 세종병원 현장감식을 마무리한 뒤 현장 브리핑을 했다.

최치훈 과학수사계장은 "1층은 불이나 모두 탔지만 2~5층은 연소가 안됐다"며 "1층에서 위층까지 연기가 어떤 경로로 올라가 사망자가 38명이나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식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세종병원에는 환자 83명, 요양병원에는 환자 94명 등 모두 177명이 입원해 있었다. 화재로 현재까지 38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파악한 연기 경로는 4가지다. 불이 난 병원과 바로 옆 요양병원 사이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틈새, 배관·전선 통로인 공동구, 2층 여자화장실 등이다. 경찰은 중앙계단, 복도 등에 있던 방화문이 열 때문에 훼손되면서 그 틈새로도 연기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에서 처음 발생해 1층 전체로 퍼졌다. 2~5층은 외벽 일부가 그을리기는 했으나 불길이 확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망자는 상당수가 2층 이상에서 나왔다. 1층에서는 의사 1명이 숨졌다.

2층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2명,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환자(6명)을 포함한 입원환자 18명 등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환자실이 있는 3층에서는 환자 9명, 5층에선 환자 8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 병원 직원 등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일부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세종병원 대형 참사엔 좁은 공간에 무분별하게 불법증축해 이어붙인 건축물도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밀양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불이 난 세종병원 내 불법증축 규모가 147.04㎡이며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에도 불법 증축은 19.53㎡라고 밝혔다. 별도 건물인 장례식장 20.46㎡, 부속건물 56.38㎡를 포함하면 불법 증축 규모는 284.53㎡에 이른다.

시는 병원 안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하고 2011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6년간 총 3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병원은 그대로 영업을 해왔다. /연합뉴스

퇴원하라는 말에 격분 병원에 불 지르려한 40대 광주지법,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목적으로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은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의 한 병원에서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30분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동으로 당시 환자, 보호자, 의료진 2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용감한 시내버스 기사

불붙은 차량 뛰어들어 운전자 구조…5초뒤 차량 폭발

시내버스 기사가 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버스 기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심정으로 불길에 몸을 던졌다고 밝혔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8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차량이 완파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으나 충격을 입은 마티즈 차량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기사 이중근(61) 씨는 버스를 멈추고 사고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 A씨를 구했다.

A씨가 빠져나오자 마티즈 차량은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큰 불길에 휩싸였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두 사람 모두 생명이 위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씨는 다시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나와 차량을 휘감은 화염을 물리쳤다.

옆에 있던 시민들도 저마다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잡았다.

목격자들은 "버스 기사가 운전자를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음이 났다"며 "5초만 늦었어도 사람이 크게 다칠 뻔했다"고 말했다.

불길에 몸을 던진 이씨는 바지에 불이 붙어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에 불이 붙어서 운전자가 빨리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차에 들어가서 다친 운전자를 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나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칭찬받을 정도로 선행한 게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정읍=박희석기자 dia@

순천서 2세 여아 택시에 치여 숨져

지난 27일 오후 1시 14분께 순천시 해룡면 한 도로에서 2살 여자 어린이가 김모(62)씨가 몰던 택시에 치였다.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친 이 어린이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동물간호복지사가 체온 측정 후 보고…진료 해당 안돼"

동물병원 업무정지 부당 판결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의 체온, 심박 수 등을 측정하고 수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동물병원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동물병원은 2015년 12월 동물간호복지사를 유망한 직업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방송에는 동물간호복지사인 B씨가 반려견의 체온, 심박 수를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심장 박동이 조금 빠르고 체온은 살짝 낮지만 괜찮은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B씨가 반려견에 대한 청진(청진기 등을 사용해 몸의 소리를 듣는 행위) 후 이를 판독하고, 약을 투약하는 진료를 한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려견의 체온이나 심박 수는 기본적인 지식에 속한다"며 "B씨가 체온이 낮다거나 심박 수가 빠르다고 말한 것은 측정한 체온과 심박 수를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개략적으로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동물간호복지사가 알약을 쪼개고 주사기를 이용해 동물의 경구로 액상 물질을 투여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약을 소분하는 행위는 투약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라며 "경구를 통한 약물 투여 역시 단순히 동물이 약물을 먹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호출 택시 착각 승객 내리자 핸드백에서 현금 빼낸 기사

쌍나팔

○…60대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카카오택시'앱으로 호출한 택시로 착각해 탑승한 30대 여성 승객이 돌연 하차하자 핸드백에서 요금 명목으로 현금을 빼냈다가 경찰서행.

○…2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60)씨는 지난 25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주점 앞에서 승객 B(여·32)씨를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자 쫓아가 핸드백에서 2만원을 빼갔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뒤늦게 택시를 잘못 탄 사실을 안 B씨가 A씨에게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문을 열고 도망갔는데 A씨는 경찰에서 "욕설과 폭행은 없었고 B씨가 갑자기 도망가자 붙잡아 택시비 명목으로 지폐 1장만 가져갔을 뿐이다"고 해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7047	1	여수시 소호6길36, 201동 8층 803호 [소호동,주은금호아파트] 73.581㎡	아파트	124,000,000 124,000,000	
2017타경 8279	1	여수시 신월2길11, 103동 1층 103호 [신월동,신월코아루아파트] 84.9551㎡	아파트	181,000,000 181,000,000	2017타경11930[중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14192	1	순천시 감사터길12, 8층 804호 43.34㎡	단독주택	114,000,000 114,000,000	임차인있음
2017타경 8309	1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1215-1 179㎡	대	11,545,600 11,545,6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1215-1 39.66㎡ 부속건물 창고21㎡ 제시외 보일러실 3.3㎡	단독주택		
2017타경 53101	1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811 347㎡[정종재지분35분의7전부] 제시외 창고 등 34.8㎡	대	10,122,320 10,122,3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에한함
		여수시 소라면 복촌1길 40 65.2㎡[정종재지분35분의7전부]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6860	1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60 258㎡	대	23,220,000 16,254,000	제시외건물매각제외
2017타경 7764	1	고흥군 과역면 석봉리 1598-1 651.7㎡	대	54,091,100 54,091,100	
2017타경 8002	1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14-4 14747㎡	답	110,602,500 110,602,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8798	1	여수시 봉계동 산140-4 3359㎡	임야	42,995,200 42,995,200	
2017타경 53347	1	여수시 남면 유송리 산227 12992㎡	임야	12,992,000 12,992,00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 8484	1	광양시 중동 1703-3 288.7㎡ 제시외 다용도실 26㎡	대	558,105,900 558,105,9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광양시 중마중앙로 211 1층172.59㎡ 2층171.05㎡ 3층49.50㎡	근린시설		
[자동차,중기]					
2017타경 10050	1	사용본거지:전남 순천시 장자보1길 80 등록번호:전남07나5275 기종:기중기 연식:2010	중기	110,000,000 110,000,000	보관장소:순천시 중앙로345,순천자동차매매상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2. 12.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2. 19.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인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윤영수